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해설 (IV)

김 정 섭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투·융자심사담당

12. 자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검토 결과작성 실무

지난호까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의 심사안건작성에 대한 실무를 실제 작성사례를 견본으로 살펴 보았다. 이번호에는 기 작성된 심사안건을 토대로 심사부서의 실무공무원들이 의뢰된 사업이 실제 자원조달이 가능한지, 투자우선순위 사업 인지 여부 등을 기초자료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검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다만, 투융자사업의 경우 도로, 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각종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분야별로 다양한 관계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견본으로 제시하는 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서울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자 2005년 상반기 투융자심사에 의뢰된 『운행경유차 저공해 대책 사업』이다.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검토 결과 작성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용자원 현황

- 사업신청을 의뢰한 자치단체의 5개년에 걸친 세입, 세출, 자체사업가용자원을 세부항목별로 기재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 자치단체에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시점에서 10억원 이상 사업중 우선 투자할 사업목록순으로 정리하여 기재

3. 자원조달능력 판단조서

- 신청의뢰사업에 대한 국비, 지방비 등 자원별로 지원가능여부 등에 대한 해당 부서 검토의견 및 종합의견을 정리하여 기재

4. 실무심사조서

- 상기의 1, 2, 3 자료는 물론 심사안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별 검토의견 및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 종합의견은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정적으로 구분기재하고 심사 의견란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함

투자심사결과 유형(규칙 제5조제3항)

- ◎ **적 정** :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반영 및 정상추진
-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자원대책 등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후 추진해야 할 사업
- ◎ **재검토** : 사업의 규모 · 시기 · 자원조달대책 · 재무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 심사시 재상정 할 수 있는 사업
-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사업
 - ※ 부적정 사업은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3년동안 심사요구 불가

● 실제 가용자원 현황 작성 견본 및 해설 ●

□ 가용자원 현황(○○시 본청)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세 입	세입합계(Ⅰ)		119,247	124,889	122,754	130,468	136,426
	자체자원	소 계	114,869	119,302	118,273	125,583	131,506
		지방세	88,433	84,986	86,818	91,373	94,514
		세외수입	26,416	34,300	31,455	34,210	36,992
		재정보조금	-	-	-	-	-
		교부세	20	16	-	-	-
	의존자원	소 계	4,378	5,587	4,481	4,885	4,920
		국비보조금	4,378	5,587	4,481	4,885	4,920
		시비보조금	-	-	-	-	-
		양여금	-	-	-	-	-
		지방채	-	-	-	-	-
세 출	세출합계(Ⅱ)		82,078	87,756	76,566	79,853	84,472
	경상비	인건비	5,357	5,739	6,143	6,274	6,556
		경상적경비	1,164	1,182	1,204	1,237	1,258
	의존자원사업	의존자원	4,378	5,587	4,481	4,885	4,920
		지방비부담금	-	-	-	-	-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6,230	5,796	5,150	5,291	9,741
		채무부담행위	150	50	50	-	-
	예비비등	예비비	-	1,068	1,016	1,323	1,169
		기타	64,799	68,334	58,522	60,843	60,828
자 체 사 업 가 용 자 원	자체사업 재원자	자체사업재원계(Ⅲ)	37,169	37,133	46,188	34,095	38,207
		소규모사업(서울시30억미만사업)	3,851	465	833	387	336
		계속사업(기투자사업)	17,115	17,665	14,805	25,704	19,963
		투자심사제외사업	5,351	6,668	4,152	3,264	2,497
		자치구지원사업	2,719	3,510	3,660	4,740	15,411
		기타	8,133	8,825	22,738		
	신규투자가용자원(Ⅰ-Ⅱ-Ⅲ)		0	0	0	16,520	13,747

※ 가용재원 현황 작성해설

①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 별도 작성

- 2003년도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작성
- 2004년도는 2004년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2005년도는 상반기 심사시에는 2005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추경예산이 없을 시는 당초예산으로 작성)
- 2006년 및 2007년도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②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기재

③ 세출의 의존재원사업중 의존재원은 세입의 의존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④ 자체사업 재원 계(Ⅲ)는

- 소규모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금액(시군10억원이하, 시도20억원이하) 이하 사업비 기재
- 계속사업은(기투자사업) 투자심사(시군, 10억원이상, 시도 20억원이상) 사업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기재
- 시군구 지원사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사업비 합계 기재(광역시도에서만 작성)

⑤ 신규투자가용재원은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을 의미함

● 실제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작성 견본 및 해설 ●

□ 투자사업 우선순위표(○○시 본청)

(단위 : 억원)

우 선 순 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2005		2006 계획		2007 이후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계	4건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사업														

※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작성해설

- ① 작성대상 : 자치단체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 ② 우선순위 책정사유는 검토의견을 요약 기재
- ③ 자체재원은 순수한 자치단체수입, 의존 재원은 지원재원 및 지방채
- ④ 비고란에는 투융자심사 주체를 구분하여 기재

예시) 중앙(상), 자체(상) 등과 같이 요약하여 기재

* 중앙(상)의 해설 :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 대상

〈가용재원 현황과 투자사업 우선순위표간의 관계〉

가용재원 현황은 심사의뢰한 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여건을 신청시점을 토대로 과거 실적 및 미래 전망을 포함한 5개년의 자료로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현황 및 자가용재원 현황을 파악하는 유의미한 자료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반면에 투자사업 우선순위표는 심사의뢰한 자치단체의 현재시점 기준에서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순위를 정한 자료로서 투융자심사의뢰사업이 실제 자치단체의 투자 우선순위중 몇 번째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또한, 두 자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

고 있는 바, 가용재원 현황중 현재 및 미래 2년간의 가용재원현황에 기재된 신규투자가용재원은 투자사업 우선순위표상 자체재원의 합계액보다 커야 한다.

이를 간략히 수식으로 표현하면

⇒ 연도별 신규투자가용재원 > 연도별 투자사업 우선순위사업 자체재원

즉, 위 수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선순위의 하순위에 배정된 사업은 실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심사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서식 ●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 사업명 : ○○사업(○○시 본청)

구 분		재원조달계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 성명)
		계	기투자	2005	2006	2007	2008	2009 이후	
계									
지 원 내 역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 부 세								
	시 도 비								
민간자본									
기금·출연금									
자체재원									
지 방 채									
종합실무의견									

※ 실제 자원조달능력 판단조서 견본

구 분		재원조달계획(억원)							검 토 결 과	검토자 (직, 성명)
		계	기투자	2005	2006	2007	2008	2009 이후		
계		16,544		720	948	1,387	2,010	11,479		
지 원 내 역	국고보조금	8,272		360	474	694	1,005	5,739	수도권대기질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34조에 의거 총사업비의 50%를 연차적으로 지원가능 ('05년 360억 확보)	환경부 대기총량제도와 환경6급 ○○○ 전화번호 기재
	지방양여금									
	교 부 세									
	시 도 비									
민간자본										
기금·출연금										
자체재원		8,272		360	474	693	1,005	5,740	국가보조금 지원시 연차별 계획에 의거 확보가능 ('05년 360억 확보)	○○시 대기과 환경6급 ○○○ 전화번호 기재
지 방 채										
종합실무의견		• 국비는 환경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국고지원(50%) 사업으로 자원확보가능 - 2005년도 환경부 국고지원(360억원) 기 확보됨. • 지방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확보가능 - 2005년도 자체재원으로 360억원 확보가능							○○과 행정6급 ○○○	

※ 종합실무의견은 실무심사부서의 담당자가 자원조달능력 분야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기재

● 실무심사의견서 서식 및 주요기재 사항 ●

실무심사의견서

□ 사업명 :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 중기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비 또는 양여금지원 가능성	○ ※ 관련부서 의견을 토대로기재
	• 지방비확보 가능성	○ 시 · 도비 ○ 시 · 군비 ※ 관련부서 의견을 토대로기재
	• 지방채의 적정성	○ ※ 관련부서 의견을 토대로기재
4.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 타당성조사 등을 토대로기재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및 시 급 성	○ ※ 심사인건 자료를 토대로기재
	• 파급효과	※ 심사인건 자료를 토대로기재
6.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 주민숙원 및 수혜도	○ ※ 심사인건 자료를 토대로기재
	• 사업요구도	○ ※ 심사인건 자료를 토대로기재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사업 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 심사인건 자료를 토대로기재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심사인건 자료를 토대로기재
10. 기 타		○ ※ 투 · 융자심사사업 심사자료(지침 14쪽~16쪽)의 사업별 조사내용 기재
11. 종합 의견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 ※ 항목별 의견을 종합하되, 조건부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재검토의 경우 재검토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실제 자원조달능력 판단조서 견본

실무심사의견서

□ 사업명 : 운행경유차 저공해 대책사업(○○시 본청)

심사항목		심사의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2003.12.3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운행 경유차 저감 대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임.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과 연계되는 사업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사업기간 : 2003년 ~ 2006년 - 사업비 : 29,688백만원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비또는 양여금지원 가능성	○ 별도검토
	• 지방비확보 가능성	○ 별도검토
	• 지방채의 적정성	○ 해당없음
4.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2014년까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50여만대를 추진시 배출가스가 176,738톤이 저감되어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한계비용이 17,105억원이 저감됨. ○ 수도권의 대기오염의 획기적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및 쾌적한 공기로 인한 시민의 정서 등 비계량적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됨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 필요성및 시급성	○ 수도권, 특히 ○○시의 경우 미세먼지(PM)은 런던의 3.5배, 이산화질소(NOx)는 파리의 1.7배 수준이며, ○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의 90%,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 초과율의 각각 99%, 6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파급효과	○ 2014년까지 운행 경유자동차 44만여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총 12,140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발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1,695톤 - 저공해엔진 개조 : 445톤 ○ 2014년까지 노후 경유자동차 6만여대를 조기 폐차할 경우 총 2,895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발생

심사항목		심사의견
6.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 주민숙원 및 수혜도	○대도시 대기오염물질의 주 원인인 경유차를 매년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이바지 함
	• 사업요구도	○ 2005년 ~ 2014년(10년간) 경유차 500,022대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 396,810대 - 저공해엔진 개조 : 36,914대 - 노후차조기폐차 : 66,298대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배출가스저감장치(국고 50%, 지방비 50%) - DPF 710만원/대, DOC 110만원/대 ○저공해엔진(국고 50%, 지방비 50%) - LPG 430만원/대, CNG 1,000만원/대 ○조기폐차(국고 25%, 지방비 25%, 자비 50%) - 470만원/대의 50%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 등)		○'03. 12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04. 12 :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03. ~ '04. : 운행경유차 시범사업 추진 ○'04. 11 ~ '05. 5 : '04년 시범사업 평가용역 추진(환경부) ○'05. 6 :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기 타		○ 2003년 ○○시 시범사업 실시 - 청소차량 등 615대, 46억원
11. 종합 의견	•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환경부주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

< 별첨 >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문개정 2001. 4. 6 행정자치부령 제130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 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

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 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시·군·구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65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

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및 시·도 바를 지원하거나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30호, 2001. 4. 6>

제1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 토막상식

트레이드오프(Trade-off)

‘이율배반’이라는 뜻. 임금·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의 동시실현은 어렵고 양자는 서로 상충관계라는 것. 즉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하면 물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 상승을 슬로다운하면 이에 수반해서 실업이 증대한다는 이율배반 관계를 일컫는다. A.W. 필립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화폐임금과 실업수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에 착안해 전자를 종축으로 하고 후자를 횡축으로 하는 곡선을 그렸는데 이것을 필립스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은 임금과 실업수준이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